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군포로 및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정함(안 제17조의1)

- 1)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를 “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(제1호에 한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6조의3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1. ~ 3. (생 략)</u>	제17조(<u>민감정보 및</u>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<u>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(제1호에 한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</u>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u>1. 법 제6조의3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</u> <u>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286